

## 2 개정조문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6(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“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<u>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</u></p>	<p>제28조의6(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(이하 이 호에서 “주택소유자”라 한다)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</u></p> <p>가. <u>주택소유자의 배우자(사실혼은 제외한다)</u></p> <p>나. <u>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[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]</u></p> <p>다. <u>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[주택소유자와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)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]</u></p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